개선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리드코프

2. 조치일 : 2023. 4. 10.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개선사항 7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불합리

검사착수일(2022.11.21.) 현재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추출기준(STR Rule)을 운영 중이나, 구체적인 거래형태나 탐지조건의 설정 없이 단순 유형만을 제시하고 있어 지점·담당자간 일관성 있는 판단이 저해되는 등 실제 모니터링 업무에 활용하기 어려우며

회사 실정과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추출기준이 다수 존재함에도 2019.7월 제정 이후 추출기준의 적정성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회사 실정을 반영하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2)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불합리

검사착수일(2022.11.21.) 현재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STR Rule)을 마련하고 수기로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나

수기 모니터링의 특성상 지점 등 1차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보고대상 발견 및 법무팀 통보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어 의심거래 검토 자체가 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정보의 전산 추출이 가능한 의심거래 유형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추진하는 등 모니터링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3) 고객위험평가모형 운영 불합리

내규「소비자금융본부 고객 확인 지침」제5조에 의하면 고객의 직업(업종) 등을 활용하여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하 '고객위험평가')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객위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고객확인 위험평가모델 산정표」를 마련·운영하고 있는데

대부계약시 법인고객에 대한 고객위험평가는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개인고객에 대해서는 직업 등 고객유형별 위험 반영이 미흡하고

기존고객에 대한 고객위험평가는 자금세탁 등의 위험보다는 대출계약 이후 원금 및 이자의 상환 여부에 따라 정상채권은 저위험으로, 연체채권은 고위험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고객위험평가모형의 주기적인 적정성 점검 및 변경 업무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 고객에 대한 고객유형별 위험을 식별·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위험평가모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고객위험평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4) 주기적인 고객확인업무 운영 불합리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제40조에 따르면 고객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무 재확인주기를 정하여 운영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내규「소비자금융본부 고객 확인 지침」제8조에 따르면 ① 정상채권은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낮은 상품 및 서비스로 평가하므로 정상채권의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는 3년으로 설정·운용하고, ② 재이행 주기는 대출 실행일 또는 기한연장일 중 최근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③ 연체채권의 경우 수시로 고객확인을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어

고객의 위험도가 아니라 채권의 건전성에 따라 재이행 주기를 정하거나 기한연장일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경우 재이행 주기가 3년을 초과하게 되는 등 내규간 또는 조항간 고객확인 재이행 기준이 상충하고, 재이행에 대한 구체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기적인 고객확인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기적인 고객확인 대상, 방법, 시기 및 적용 기준 등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하고 재이행에 대한 구체적 이행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5) 전사적 위험평가 불합리

내규「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에 의하면 위험기반접근법(RBA)에 따라 전사적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하나,

금융정보분석원 위험평가시스템상의 지표 보고 절차와 전사적 위험평가 절차를 구분하지 않고, 자체 고유위험 등을 정기적으로 식별·평가하여 취약점을 개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사적 위험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전사적 자금세탁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기 위한 주기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측정·평가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6) 독립적 감사업무 운영 불합리

검사착수일(2022.11.21.) 현재 상근감사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만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결과 및 개선조치를 보고서의 형태로 기록·보존하지 않았으므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부서와 독립된 부서에서 전 부서 및 지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개선하는 독립적 감사를 수행하고 이를 감사보고서의 형태로 기록·보존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감사업무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7) 임직원 교육 불합리

금융회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그 직위,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실과 감사, 경영진, 고객확인 담당직원 등의 직위나 담당업무에 따라 차등화된 교육내용 없이 획일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자료에 개정된 상위 법규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등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어 교육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임원, 감사, 법무실 등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료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제고하시기 바람